

기안용지

시행상 특별취급: 중형

| | | | |
|---|--|----------------|--------------|
| 1988년 6월 15일 영주시청 도시계획과 | 분류기호 영부 30114-기C (전화: 640-3395) | 시 행정상 특별취급: 중형 | 구청장 시 |
| 부본기간 영구·준영구 10.5.3.1.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진 건</div> | | |
| 수신처 부본기간 | | | |
| 시행일자 88. 6. | | | |
| 보관 부청장 도시계획과 공무원직 | 협조 기관 | 문서종 제 | |
| 기안책임자 김영환 | 발송 안 | | |
| 경유 수신 참조 | 기안 참조 | 발신 명의 | 1988년 6월 15일 |
| 계 목 | 도시계획사업 (근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변경 | | |
| 제 1 안 | | | |
| 수 신 : | 내부 결재 | | |
| 제 목 : | 같은 건 | | |
| 1. 건관 30247-48 (88. 6. 2)호와 관련입니다. | | | |
| 2. 건설부 고시 제 522호 (88. 12. 8)로 근원 조성 계획이 | | | |
|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94호 (87. 2. 17)로 지적 승인된 당 구 관내 | | | |
| 무등 산 7-3번지의 40필지 일대 무등 제 1근원근원 도시 계획 사업 | | | |
| (근원 조성)을 시행로자 도시 계획법 제 25조의 2호 규정 미달 | | | |
| 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629호 (87. 10. 27)로 | | | |

영주시청 도시계획과
 김영환
 1988년 6월 15일

일반인에게 도시 계획 사업 (당원 조성) 시행에 따른 서류 양립근거

(87. 10. 27자 서울신문)를 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17호 (87. 11. 18)

로 도시 계획 사업 (당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수용

또한 수용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차등 계획은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

부자 합니다.

가. 인가 내역

(1) 사업 시행지

· 부동 제 1근리공원 : 양조구 부동 산 7-3호의 4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 계획 사업 (당원 조성)

· 명칭 : 부동 제 1근리공원

(3)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부동 지구 개발 사업 소장)

(4) 사업 개요

· 부동 제 1근리공원 - 부지 218,168 m^2

「지물 2동」 면적 99 m^2

도면 B-3-7 2,306 m^2

2122 기탁 : 1식

나. 고 시 내 역

(1) 고 시 방 법 : 근보 게재

(2) 고 시 안 : 별첨

제 2 안

수신 : 건설부 장관

참조 : 도시 계획 과장

제목 : 같은건

1. 건설부 고시 제 522호 (86. 12. 8) 토 공원 조성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94호 (87. 2. 17)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638호 (87. 10. 27)로 공람공고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제 877호

(87. 11. 18)로 도시 계획 사업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이

대하여 수문 또는 사용권 토지의 소유자 주소 추오 게재로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 하였기 관계로서 첨부하여 보고 합니다.

첨부: 1. 인가증 사본 1부

2. 도시문 사본 1부

3. 조성 계획 도면 7부

제 3 안

수신 : 송무처 장관

| |
|---|
| 참조 : 문화공보관 |
|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
|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관보 게재 구분 : 도시 |
| 나. 관보 게재 건명 : 도시 계획 사업 (공원 조성) 실시 |
| 계획 인가 변경 |
| 다. 법적 근거 : 도시 계획 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
|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
| 제 4 안 |
| 수신 : 서울특별시청 |
| 참조 : 공원과장, 도시계획 과장 |
| 제목 : 같은건 |
| 1. 건설부 고시 제 522호 (86. 12. 8)로 공원 조성 결정되고 |
| 서울시 고시 제 94호 (87. 2. 17)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
| 제 628호 (87. 10. 27)로 공람 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17호 (87. |
| 11. 18)로 도시 계획 사업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에 |
|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주소 착오 게재로 아래의 같이 |

변경인가 하엿기 관계조서 첨부하여 보고 합니다.

첨부 : 1. 인가증 사본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3. 조성 계획 도면 : 변경 내역 없기에 생략

제 5 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시민 과장

제목 : 시장 주민 날인 신청

1.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 사업 (금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변경 사항을 시행토자 별첨 주민부서 시행공문 및 인가증에 시장 주민

날인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별첨

첨부: 1. 인가증 사본 (주민 날인) 1부
2. 인가증 및 도시안보청장 1부

제 6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같은건

1. 우리구 관내 모든 제 1 근린공원 도시 계획 사업 (금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수은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주소

착오 개제로 변경인가 하엿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소서

첨부: 1. 인가증 사본 1부

2125

2. 고시문 사본 7부

수신처 : 도시 정비 과장, 주택 과장, 건설 관리 과장, 문화 과장,

목 2, 4 동장

제 7 안

수신 : 목동 지구 개발 사업 소장

참조 : 토목 근사 과장, 관리 과장

제목 : 같은건

1. 목동 토굴 30114 - 5597호 (87. 8. 21) 및 금복 30114 - 5795

(87. 11. 18)호와 관련 인니다.

2. 전 호와 관련하여 도시 계획 사업 (목동 제 1 근린공원)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 작오 게재로 아태와 같이 변경 인가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 에

착오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인가증 사본 7부

2. 고시문 사본 7부

3. 관계도서 : 변경 내역 없기 생략 함.

제목 : 도시 계획 사업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변경

1. 사업 시행지 : 양천구 목동 산 7-3호외 4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 계획 사업 (공원 조성)

• 명 칭 : 목동 제 1 근린공원

3.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목동 지구 개발 사업 소장)

4. 사업 개요

• 목동 제 1 근린공원 : 토지 278,768 m^2

건물 2동 연면적 99 m

도로 - B=3-7 m

L=2,306 m

기타 - 1식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9.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상 부지의 소재지 - 지포, 지부, 지지 및 소유자
이의의 성명 및 면적 : 면적
- 7. 부지 (건물) 소유자와 부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의 주소 및 성명 : 면적
- 8. 인가 내용 : 면적 인가본서 (상표)
첨 부 : 인가조건 - 조건과 같은 (상표)

위와 같이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시행령 제 6조 에 의거
도시 계획 사업 (공공 건설) 시시 계획 인가본서 인가 함

1988. 6.

국 양 부 표 시 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제목 : 도시 계획 사업 (금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변경

1. 건설부 고시 제 522호 (86. 12. 8)로 상원 조성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94호 (87. 2. 17)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817호 (87. 11. 18)로 도시 계획 사업 (금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도시 계획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양천구청 금원 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6.

서울특별시 장

장부 : 부동 제 1 근린공원 - 녹원 조성